

전문위원회 설치규정

제1조 회원의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특정한 업무를 기획, 진행,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 제7장 제11조(위원회 및 연구회의 설치)에 의거 전문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2조 위원회는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내규를 정할 수 있다. 위원회 내규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조 위원회의 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임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 상호간의 호선으로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, 필요시 간사를 선출할 수 있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위원장 및 부위원장, 간사의 임기는 위원회 내규에서 정한다.

제4조 회원은 학회장 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제5조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사업을 달성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자진 해산할 수 있으며, 상설기구로 계속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상설위원회 혹은 연구회로 변경하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.

제6조 위원회가 정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이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199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2년 5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